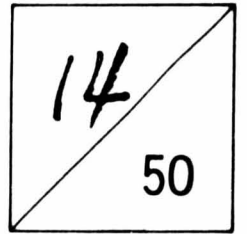


대 외 비

파기 1992. 12. 31

관리 번호	92-40
----------	-------



〈南北政治分科委員會〉

第 1 次 會 議 會 議 錄

1992. 3.

1. The first part of the documen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ccurate records of all transactions and activities. It emphasizes that this is crucial for ensur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organization's operations.

2. The second part of the document outlines the specific procedures and protocols that must be followed to ensure that all records are properly maintained and updated. It details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various staff members in this process.

대 외 비

파기 (1992. 12. 31)

관리
번호

50

〈南北政治分科委員會〉

第 1 次 會議 會議錄

1992. 3.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警 告 文

本 文件은 大韓民國의 安全保障上 重要な 祕密 內容이 收錄되어 있으므로 다음 事項을 遵守하여 야 하며 이를 違反할 時는 關係法規에 依據 措置 됩니다.

1. 關係者外의 閱覽 및 取扱을 禁합니다.
2. 複製 및 複寫를 禁합니다.
3. 直接的인 引用을 禁합니다.
4. 豫告文에 依據 破棄해야 합니다.

〈目 次〉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5

〈附錄〉 우리側 委員長 記者會見 85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92. 3. 9(月) 10:00~12:18

나. 場 所 : 板門店 우리側地域 「平和의집」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北 側
<p style="text-align: center;">〈委 員 長〉</p> <p>李東馥 (남북고위급회담 대표)</p>	<p style="text-align: center;">〈委 員 長〉</p> <p>백남준 (남북고위급회담 대표)</p>
<p style="text-align: center;">〈委 員〉</p> <p>閔炳錫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p> <p>金達述 (통일원 자문위원)</p> <p>崔圭鶴 (총리실 심의관)</p> <p>姜根鐸 (외무부 심의관)</p> <p>辛光玉 (법무부 심의관)</p> <p>申 丁 (합참 민심실장)</p>	<p style="text-align: center;">〈委 員〉</p> <p>김완수 (외교부 순회대사)</p> <p>조상호 (「조국전선」 중앙위 서기국 부국장)</p> <p>최성익 (조평통 서기국 부장)</p> <p>정영춘 (조평통 서기국 참사)</p> <p>심태진 (정무원 상급 심의원)</p> <p>조성대 (조선중앙방송위 처장)</p>

※ 隨行員 : 雙方 各其 6名

會 議 錄

2. 會議錄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 交換〉

남(이동복) : 자 앉으세요. 악수 한번 합시다.

북(백남준) : 이번에 새롭게 여러 선생님들 다 나오셨습니다. 우리쪽에서 이렇게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 몇 분 있어요.

남(이동복) : 뽀뽀 얼굴도 있고, 또 새로 뽀뽀는 얼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건물 바깥 구조가 완성되고 방들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정치분과위원회가 안방 차지했습니다.

북(백남준) : 안방 차지. 합의서 이행을 위한 사업으로서 이게 첫 회합이고.

남(이동복) : 첫 회합예요.

북(백남준) : 3개 분과위 가운데서도 맨 먼저 시작됐습니다.

남(이동복) : 맞습니다.

북(백남준) : 아주 의의가 있고 또 우리 선구자가 아니겠는가?

남(이동복) : 「선구자」 북에서 그 「선구자」 노래합니까?

북(백남준) : 하지요.

남(이동복) : “일송정 푸른솔은 늙어늙어 갔어도” 하는, 그것은 안 하지요?

북(백남준) : 우리는 또 「선구자」의 노래가, 내용이 그것하고 좀 달라요.

남(이동복) : 좀 달라요?

북(백남준) : 예.

남(이동복) : 그래요. 우리 참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됐네요.

북(백남준) : 어떻게 뭐, 새로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남(이동복) : 어떻게 할까요? 조금 환담 끝나고 회의 시작하고 나서 소개를 드릴게요.

북(백남준) : 그렇게 하겠어요?

남(이동복) : 그렇게 하십시오. 소개하는 것도 조금은 공식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환담 끝나고 나서 회의 시작되면서 합시다.

북(백남준) : 그렇게 하지요. 어떻게, 저 송한호 선생님 건강한가요?

남(이동복) : 아, 그럼요.

북(백남준) : 송한호 선생이랑 우리 고위급회담과 관련해서는 수고가 많았지. 또 많은 일 했지 뭐.

남(이동복) : 그럼요.

북(백남준) : 예비회담때부터, 예비회담 8차에 걸쳐서 본회담을 탄생시키고, 또 본회담 대표로 또 나왔다가, 그런데 마지막에 합의서 발효할 때 그때 자리에 없으니까 좀 섭섭하더구만.

남(이동복) : 그랬어요? 우리 송한호 대표, 그 뒤에 본인도 좀 서운해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 서명을 우리 백대표하고 송한호 두분이 하시지 않았어요. 이거 아주 역사문건이 하나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북(백남준) : 정원식 총리랑 다…….

남(이동복) : 다 편안하죠. 어디, 연총리께서도 편안하시고요?

북(백남준) : 예. 요즘 양춘가절이 돌아오니까, 봄 날씨도 따뜻하고 요즘 초목들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남(이동복) : 그렇습니다.

북(백남준) : 조금 푸른기가 나고.

남(이동복) : 우리말에 “정 2월 3월이라네”하는 노래.

북(백남준) : 아, 그것 우리도 불러.

남(이동복) : 거기도 부릅니까?

북(백남준) : 그럼.

남(이동복) : 그게 사실은 음력으로 하는 거지. 음력으로 하는 것이니까, 정 2월이면 3월까지가 정 2월이고 3월이라네 하는 이게 4월인데. 2월까지도 사실은 옛날에는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금년에 아주 이상해요.

우리 남쪽은 거의 겨울이 없이 지난 것 같아요. 북쪽도 마찬가지로요?

북(백남준) : 마찬가지로예요.

남(이동복) :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려서 생각을 해봐도 국민학교 입학·개학이 양력 3월에서 4월인데, 3월이지요.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서 “입학추위를 한다” 이랬는데, 금년에는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냥 이제 경칩도 지났고 대동강 물도 풀렸을 테고, 개구리도 나왔을 테고, 이제 뭐 3월 20일이면 춘분이니까.

북(백남준) : 원래 경칩이 오면 벌레들이 다 입을 다시 벌립니다. 동면하던 벌레들이.

남(이동복) :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북(백남준) : 그런데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쪽 시베리아쪽 고기압이 약화되고 남으로 이렇게 열풍이 불고, 그 다음에 온습도가, 온습이 상당한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불어오고, 그래서 좀 덥다고 그래요.

남(이동복) : 글썽요. 이제 그 환경문제하고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요. 특히 남극 상공에 오존층이 구멍이 뚫렸다 그래가지고 미래학자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우리한테 공포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요전에 일본의 어느 신문에선가 21세기에 대비한 50개 질문인가, 이래가지고 미래학자들이 모여서 했는데, 이 환경공해가 인구증가하고 관계가 있지요.

지구인구가 58억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 지구는 감당할수 없대요. 급격하게 환경이 파괴되고, 그러고 나서는 지금과 같은 인구증가 추세라면 우리 인구가 앞으로 90년 후에는 완전히 맘모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지구는 또 하나의 빙하기로 지금 접어들어 갔다. 이런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적게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참 걱정이 되고 우리까지야 이제 뭐…….

북(백남준) : 걱정마시라요. 그저 자연은 사람이 정복하게 되어 있으니까.

남(이동복) : 또 그리고 우리는 뭘 가지고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북(백남준) : 자연은 사람이 정복하게 되어 있고, 또 사람에게 의해서 정복되게 돼 있고 그러니까 크게 염려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남(이동복) : 아니 그런데 또 걱정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켜주는 것은 지금 우리 지구 대기권의 산소의 1/3인가 1/4을 남아메리카 아마존 정글지대에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정글이 말이지요, 매년 7%씩인가 없어지고 있대요. 그런 것은 다 아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브라질에서는 그동안 선진국에서 우리를 이용해서 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개발하지 않게 할려면 선진국에서 나눠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복잡한 것 같아요.

북(백남준) : 국제환경기구라는 것이 있으니까 무슨 대책이 서겠지요.

그런데 보면 우리 북남합의서도 발효되고 또 우리 민족의 통일기운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게 또 일기를 더 부드럽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남(이동복) : 글썄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백선생이 항상 이렇게 아주 童顔의 웃는 표정으로 나오시니까, 원래 겨울에 외투입은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겨울에 아주 찬 동장군이 아니라 태양의 따뜻한 웃음이라는 것 아니예요.

우리 백선생 항상 웃으시고 그러니까 날씨도 따뜻해지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북(백남준) : 정말 반가운 소리인데, 어떻게 기장밥을 좀 잡수시라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어디인가 공군 무슨 학교 졸업식에서인가 그런 얘기가 됐더구만. 그런데 좀 어찌보면 다른 얘기이기도 하지만 봄 녹이를 하는데 외투를 벗지 않는 사람은 회랍의 우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덥고 이

런 걸 오히려 대하는게 더 좋다.

남(이동복) : 그래요. 웃어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자주 웃어야 된다고.

북(백남준) : 그래서 그것이 표상적인 얘기는 좋은데, 또 그 내용도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있더구만.

남(이동복) : 우리가 이제 웃기로 작정했으니까 이제 웃읍시다.

북(백남준) : 웃읍시다. 그런데 웃음은 최후의 웃음이 제일 값있다고 그러더구만.

남(이동복) : 아, 그런 얘기 있지요. 『최후에 웃는 자가 정말 웃는 자다』 그런 얘기가 있지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좀 정돈해 주시지요.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여기에 의해서 이제 분과위원회 백위원장 하고 제가 회의를 진행을 시켜야 되겠는데, 오늘은 우리측 지역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으니까, 관례에 따라서 제가.

북(백남준) : 이선생이 사회를.

남(이동복) : 예,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통일각에서 할 때는 백위원장께서.

북(백남준) : 쌍방 합의사항이지 뭐.

남(이동복) :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측 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 오른쪽 옆에 민병석 위원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나오셨고.

그 다음에 제 왼쪽으로 김달술위원 잘 아시겠지만 통일원에서 나오셨고.

그 다음에 최규학위원은 저하고 같이 총리실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강근택위원은 잘 아시겠지만 외무부에서 나오셨고.

신광옥위원입니다. 법무부에서 나오셨습니다.

북(백남준) : 아, 우리는 명단을 받고, 신광옥위원의 이름이 나왔길래, 이게 여성이예요? 우리는 그쪽에 위원 나오면 홍일점이 나온다고 그렇게…….

남(이동복) : 여성적으로 안 생겼어요?

북(백남준) : 아니, 남성적인데 뭐.

남(이동복) :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나오신 신정위원. 이렇게 여섯분입니다. 저희 위원 여섯분을 소개해 드렸고.

북(백남준) : 예, 저희들 소개, 제 오른쪽부터 김완수위원입니다. 외교부 순회대사.

남(이동복) : 예, 반갑습니다.

북(백남준) : 그 다음에 이제 최성익위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고,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분이 심태진위원이고, 정무원 사무국 상급 심의원입니다.

남(이동복) : 반갑습니다. 심선생이죠?

북(백남준) : 예, 심. 잊어 버릴것 같으면 심청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상호위원입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이고.

그 다음에 정영춘위원입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참사.

그 다음에 저쪽 분이 조성대위원입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처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부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또 한 배를 탔습니다. 호흡을 맞춰서 노를 잘 저으면 곧은 직(直)자로 갈 수 있겠습니다.

남(이동복) : 이 배는 이제 우리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는 안 되고.

북(백남준) : 아, 그럼.

남(이동복) : 바다로 몰고 나가서…….

북(백남준) : 올라 가다가 미끄러져도 안 되고.

남(이동복) : 순항을 하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두가지 좀 상의를 드려야겠는데. 아까 백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모임은 상당히 의의가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과위원회들, 3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돼서 첫 모임이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분과위원회가 갖는 특별한 위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첫 모임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보면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고 쌍방이 합의해서 공개로 할 수 있는데, 오늘 모임은 공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저희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백남준) : 그쪽에서 그런 제안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남(이동복) : 그렇습니까?

북(백남준) : 비공개로 해야 생산적이고 능률적이고 그러니까, 비공개로 많이 하시자고 하던 건데 오늘 따라 또 공개로 하시자고 하느만.

남(이동복) : 우리는 이제 이 남북대화를 유리알처럼 드러내 놓고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북(백남준) : 그럼, 우리가 합의사항대로, 원칙으로 정한 비공개로 하지요. 우리는 또 합의서에 충실하게 그렇게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왔고 그래서 비공개로 합니다.

남(이동복) : 비공개를 희망하십니까?

북(백남준) :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고요. 다른 이유없고. 우리는 그저 원칙으로 정한 비공개로 하는 걸로 알고 왔기 때문에.

남(이동복) : 그런데 다시한번 상의를 드리겠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첫날 회의는 첫날 회의로서의 어떤 특별한 위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공개회의로 해서 이 정치분과위원회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가겠느냐 하는 남북 쌍방의 입장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직접 보면 아마 우리 사업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칙대로 비공개가 좋다 하는 것이 귀측의 아주 확실한 입장이라면 저희가 무슨 공개를 고집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공개로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비공개로 할까요?

북(백남준) : 뭐 이제 아무래도 언론매체에 오늘 회합이 진행된다면 다 통보를 해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 그냥.

남(이동복) : 비공개로 할까요?

북(백남준) : 예. 그냥합시다.

남(이동복) :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북(백남준) : 다른 분들은?

남(이동복) :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은?

그럼, 오늘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하고. 또 그동안 남북회담의 오래된 관례의 하나가 주최측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제가 먼저 저희들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회담의 성격이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것을 문안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릴텐데, 하나 전통이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쌓아 올려 간다는 뜻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겠지요. 제 발언문을 미리 드릴수가 있는데, 그러는게 좋겠습니까?

북(백남준) : 아 그럼. 발언문을 주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남(이동복) : 그렇게 하지요. 그럼, 드릴게요.

북(백남준) : 우리도 제안문건 그쪽에 드리겠고.

남(이동복) : 이거 3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측 기조발언 〉

백남준 위원장!

그리고 북측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남북화해』 분야를 이행하기 위하여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나는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 오신 북측위원 여러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귀측도 아는 바와 같이 남북쌍방은 지난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역사적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남과 북은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3개 분과위원회중 가장 먼저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남북화해』 분야에서 규정된 사항들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뜻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의 임무와 책임은 막중하며, 온 거래

의 눈도 바로 우리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가 앞으로 원만하게 그리고 능률적으로 운영되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나는 정치분과위원회가 해야 할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해 먼저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분명히 우리 민족사의 역사적 전환을 이룩하게 한 획기적인 합의문건입니다.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할 것』을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금세기초 이래 우리 민족은 국권상실에 이어 조국광복을 맞이한 이후에도 근 반세기 동안이나 외세에 대한 국토분단과 동족상잔에 의한 민족분열로 동족간에 치열한 정치군사적 대결을 계속해야만 하는 불행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번에 우리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탄생시킴으로써 냉전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기약하는 화해와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그러한 뜻에서 민족자주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민족자결의 정신을 한데 뭉친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쌍방은 합의서 전문에서 『쌍방 사이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상대방을 적대시하거나 전복시키려는 정책을 버리고 평화정착과 공존공영이라는 특수관계의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는 데에 남과 북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을 성취하기에 앞서 먼저, 화해협력과 평화공존관계를 정착시키겠다고 한 이러한 약속은 우리가 달성해야 할 통일민족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겨레는 화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민족의 역량을 더이상 적대와 대결에 소모하지 않고 민족경제건설과 민족구성원의 생활향상으로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같은 화해협력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남북기본합의서』는 언제까지나 화해협력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족 역량을 결집시켜 평화공존과 공영의 단계를 앞당기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온 겨레가 소망하는 평화통일을 하루속히 달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데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에서 우리는 7·4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이 곧 그것입니다.

자주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통일문제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민족자결과 당사자 해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통일과 관련된 문제는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지 남북 쌍방이 그 당사자이며, 따라서 직접 남북쌍방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합의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 우리는 평화의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통일의 방법에 있어서 무력과 폭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곧 통일의 방법으로 6·25와 같은 무력의 행사를 배제함은 물론 폭력으로 상대방을 전복하는 행위도 추구하지 아니할 것임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평화의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우리는 통일의 방법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정하였을 뿐 아니라 남북간에 우선 평화를 심어야 한다는데도 합의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합의서 제5조에서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통일에 이르는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민족대단결을 추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같은 민족대단결은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이 구현되는 바탕위에서만 가능하다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7천만 민족이 단결과 단합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대전제로서 먼저 남에서나 북에서나 민주주의와 인권이 구현되는 조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체와 거주이전, 직업선택의 자유라든가 종교와 양심 그리고 언론·출판·집회·결사와 학문·예술의 자유 등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와 기본권을 공유하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는 결코 민족단결은 운위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상과 같은 훌륭한 의의를 갖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우리민족 스스로의 노력으로 창출해 내었다는 점에서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들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시키면서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남북화해』 분야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속합의서들을 작성해야 할 중대한 임무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남북화해』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해야 할 기본과제이며, 『남북기본합의서』전체를 이행·준수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진정한 『남북화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첫째, 남북쌍방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를 준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쌍방 총리들이 합의·서명했을 뿐 아니라 쌍방의 최고당국자가 각각 이를 확인하여 발효시킨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맺어진 공식적인 합의문서입니다.

따라서 남북쌍방 당국에게는 민족앞에 엄숙하게 약속한 이 합의서를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무거운 책무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실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부터 가져야만 합니다.

만약 상대방 체제와 법질서를 무시하고, 폭력혁명을 추구하거나 파괴·전복활동을 계속한다면 남북간에는 결코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화해보다 대결을 고취하게 되며, 시계의 바늘을 과거의 냉전시대로 되돌려 놓게 될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에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제2조에서 『서로 상대방의 내부분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제3조에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하고』, 제4조에서 『파괴·전복행위를 일체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것은 바로 이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남북쌍방이 당사자 해결원칙을 성실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당사자 해결원칙은 두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문제와 같은 민족적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문제는 외세를 개입시킴이 없이 반드시 민족자결 원칙에 따라 남과 북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해결해야 합니다.

평화나 통일은 결코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족 스스로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이룩해야 하며, 그래야만 비로소 평화와 통일이 진정한 민족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서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엄숙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결코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사자 해결원칙의 또다른 의미는 문제해결은 반드시 책임있는 당국자에게 맡겨야 하며, 책임도 권한도 없는 이른바 『각계각층 인사들』을 상대로 한 『선전·선동적 차원에서의 행위』는 결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귀측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삼권분립과 대의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민주사회에서는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법 등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위임을 받아 그것을 담당하는 책임있는 당국이 엄존해 있습니다.

만약, 당국을 제쳐놓고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평화나 통일문제를 협상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오히려

려 장애를 조성하여 『남북간의 화해』를 크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호혜의 원칙입니다.

남북호혜의 원칙은 그 기초를 남북 상호주의와 민족공동의 이익추구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화해』는 쌍방의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고 또 쌍방에게 다같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어느 일방의 입장만을 앞세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또는 쌍방에게 다같이 피해가 되는 것은 결코 『남북간의 화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쌍방이 서로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파괴·전복 활동을 하지 않으며,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해 나간다면 남북 화해는 순조롭게 이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역량을 낭비하고 민족자존을 손상시켜 왔던 상호 비방과 파괴·전복 활동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불필요한 대결 등을 중지하는 것은 곧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공통분야를 찾아 서로 협력하는 호혜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야 하며, 상대방의 이익과 존엄을 일방적으로 해치는 대결적 자세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남북간의 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원만하게 협의·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상대방 체제와 법질서 존중의

원칙, 남북당사자해결 원칙, 그리고 남북호혜 원칙이 잘 지켜져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이같은 원칙들이 성실히 준수될 때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 맡겨진 기본사명 즉, 『남북화해』분야에 관한 구체적 대책들을 순조롭게 그리고 원만하게 협의·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이제 나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해야 할 『남북화해』분야의 각 조항들에 대해서 그 구체적 대책에 관한 우리측의 견해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측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 분야는 제1조에서 제8조까지 모두 8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들이 협의·해결해야 할 조항들은 『남북정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를 제외한 7개 조항이며 이 7개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속합의서들을 작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과제이며 의무입니다.

나는 이 7개 조항에 대한 우리측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우리 정치분과위원회의 소관분야인 화해분야에 규정되어 있는 제1조의 상호 체제인정·존중 조항, 제2조의 상호 내부분제 불간섭 조항, 제3조의 상호 비방·중상 중지 조항, 제4조의 파괴·전복행위 금지조항 등은 군사분과위원회의 소관분야인 불가침 분야의 제9

조 무력불가침 조항, 제10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조항, 제11조 불가침의 경계선 조항 등과 아울러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서 이제 바야흐로 개막된 남북간의 희망찬 화해협력 시대가 국제적으로 이미 확립되어 있는 평화공존 원칙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 주고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이들 조항들은 1954년 주은래 중국수상에 의하여 세계에 소개되었던 평화공존 5원칙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임을 북측대표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들 조항들에 담겨진 합의내용들은 우리 남과 북이 함께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제연합 헌장의 정신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은 이들 합의서의 조항들을 성실하게 이행·준수함으로써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바탕위에서 상부상조와 공존공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남북기본합의서』화해분야의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4개 조항은 정치분과위원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과제들을 각 조항들의 정신에 맞게 협의·해결함으로써 필요한 부속합의서들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제1조의 상호 체제의 인정·존중 합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제도와 이의 바탕이 되는 법질서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와 아울러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인 남북간의 상호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

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협의·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2조의 내부분제 불간섭 합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호 불간섭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협의·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쌍방은 서로 상대방의 기본적 정치형태와 체제, 경제제도와 법질서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되며, 또 상대방의 외교정책과 제3국과의 쌍무적·다무적 관계를 시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은 서로 상대방으로부터의 정치적·경제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무력은 물론 정치적·경제적 간섭을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조의 비방·증상중지 조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는 비방·증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에 합의하여야 할 것이나, 남북화해에 이 문제가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상대방 국가원수 등 특정인이나 체제에 대한 야비한 비방행위는 우선적으로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4조의 파괴·전복행위 금지조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지난 반세기의 남북관계를 얼룩지게 만들어온 각종 폭력사태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의 토대위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행위를 포기하고 배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7천만 민족의 염원인 분단조국의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암적 요인이었던 상대방 체제에 대한 일체의 전복정책과 행위를 근원적으로 영원히 근절시키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명문조항들에 의거하여 이상에서 열거되었거나 또는 열거되지 못한 많은 과제들을 놓고 서로 민족의 차원에서 흥금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되 문제의 중요도와 완급을 가려서 민족화해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천에 옮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상의 여러 문제들은 특히 쌍방의 법률적·제도적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그러한 문제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견지에서 『남북법률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켜 쌍방의 실태를 폭넓게 조사·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셋째로 제5조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의 전환과 현 군사정전협정 준수 조항은 조문의 성격상 별도의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쌍방이 한반도의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문제를 제3자의 개입없이 직접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합심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이는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향한 귀중한 합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제6조 국제무대에서의 대결중지와 상호협력 조항에 대해서도 이행대책을 협의하여 사업별로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 남북대표부간 협의체 구

성은 물론 남북이 동시 주재하는 재외공관에서도 상호 협력창구를 개설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제7조 남북연락사무소 문제는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시급히 협의·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우리측의 합의서(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될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서가 채택·발효될 수 있도록 쌍방간의 협의를 조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따라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남북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라 칭한다)를 각기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연락사무소 명칭은 남측은 『남북연락사무소 서울측사무소』로 하고 북측은 『남북연락사무소 평양측 사무소』로 한다.

제 2 조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상대측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각기 교환 설치한다.

제 3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연락사무소는 소장 1명, 부소장 1명, 연락관 5명과 기타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소장은 차관 또는 차관보급으로 한다.

(이것은 귀측의 경우는 부부장 또는 차관보급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 ② 기타 필요한 인원의 수는 쌍방 합의에 의해 정한다.
- ③ 쌍방은 연락사무소의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제 4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 ① 남북간의 제반 연락과 협의에 관한 사항
- ② 남북직통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③ 남북간의 각종 왕래와 접촉에 따른 안내와 편의제공 및 절차협의에 관한 사항
- ④ 남북정치, 군사, 교류·협력분과위원회와 남북군사,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
- ⑤ 기타 남북연락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사항

제 5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① 남북연락관실
- ② 남북왕래·접촉 안내실
- ③ 남북이산가족 면회실, 우편물 교환실, 전화교환실

④ 기타 남북이 합의하는 기구

제 6 조 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쌍방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연락과 접촉을 가지며 상대측의 접촉제의
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락한다. 쌍방 연락사무소장 회의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기구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쌍방 연락사무소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③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연락사무소 직원에 대해서는 상호 신변안전
을 보장하며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을 인정한다.

④ 연락사무소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로 한다.

각기 공휴일은 휴무하며 이를 하루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쌍방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의하여 위에서 지정한 근무시간과 날짜
이외의 날짜와 시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제 7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8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 년 월 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 석 대 표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 장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묵

이상에서 나는 『남북화해』분야의 조항들을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 지켜야 할 기본원칙들과 조항별 실천과제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안에 대한 우리측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나는 남북쌍방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과 준수를 온겨레 앞에 엄숙히 약속한 만큼,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정착과 공존공영의 새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앞길에는 반드시 밝은 전망이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앞에는 지금 이러한 밝은 전망과 낙관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은 화해협력의 시대의 진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암초가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귀측의 핵무기 개발여부에 대한 민족적, 국제적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러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북쌍방은 이러한 국내외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발효시킨바 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이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핵사찰을 조속히 실시하고 이와 아울러 국제조약상의 의무인 국제핵사찰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귀측은 말로는 『핵무기 개발의 의사도 능력도 없다』

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남북핵사찰과 국제핵사찰을 차일피일 뒤로 미루는 2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측이 진정으로 『핵무기 개발의 의사도 능력도 없다』면 즉각 남북핵사찰과 국제핵사찰을 받아들임으로써 국내외의 의구심을 깨끗이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비등한 세계여론과 이 문제에 대한 온 겨레의 높은 관심에 비추어 볼 때 핵사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남북간의 진정한 화해 협력은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으며, 남북대화 또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기회를 빌어 귀측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오늘 남북정치분과위원회의 역사적 발족에 즈음하여 북측의 위원여러분도 남측의 동료 위원들과 함께 이땅의 평화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이 첫회의가 이러한 공통의 역사의식에 입각하여 7천만 민족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에 부응하는데 성실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이만 끝내겠습니다.

북(백남준)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목이 다 쉬신 것 같은데 물이랑 마시면서
.....

남(이동복) : 감사합니다.

북(백남준) :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서 그쪽 입장 표시와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 합의 제안 이런 것들을 내놓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나머지 문제들은 제가 발언한 다음에 토론 과정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제 발언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그쪽에서 우리 핵문제와 관련해서 『위기심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 국제조약상 의무를 이행 안하면서 핵개발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것은 북남합의서 이행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우려 된다』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심히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측의 발언은 대화 상대방인 우리에게 대한 난폭한 우롱이고 도전이다. 명백히 말하자면 귀측은 내정간섭적이고 오만무례한 언동으로써 우리를 더이상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는데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런 자선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정신, 주체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알

아서 자주적 입장에서 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문제이든지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의해서 자신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오히려 민족주체성이 없는 귀족의 사대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귀족이 전체 민족에게 있어 현실적인 위협으로 되고 있는 미국의 힘의 정책에 대해서, 일본의 핵무장화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면서 외세의 장단에 발맞춰서 동족인 우리에게 대해서는 그 무슨 걱정이요, 뭐요 하는 것을 보면 귀족의 외세의존, 사대굴종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러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난 6차 회담때, 우리측이 내놓은 일본의 핵무장화와 관련해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대처할데 대한 이런 제안을 우리가 내놨는데, 귀족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적 태도를 취하고 그 사실을 일본 정부에 공식 꼬아 바치는 것과 같은 이런 작태를 놓고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 더 없는 모멸감과 수치감으로 해서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민족을 멀리하고 외세에 아부하고 빌붙어 하는 그런 악습을 이제는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그쪽에서 국제적 의무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것은 귀족이 다 알면서 하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하고 핵안전담보협정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최고인민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비준 받아가지고 핵사찰을 받는다는 것을 명백히 했습니다.

이래서 국제원자력기구하고 2월 관례회의에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지지와 공감을 불러 일으켜서 국제적 공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귀측도 알겠지만 우리가 4월 8일날 최고인민회의 9기 3차 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담보협정을 우리가 심의 비준하고 할 데 대한 정령도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그 마당에서도 유독 2차 이사회때 남측만 일부 나라들을 추동해서 분주탕을 부렸습니다.

원래 국제적 의무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지 귀측에서 주제넘게 간섭하고 걱정 할 문제가 아닙니다.

남측은 분수에도 맞지 않는 간섭을 그만두고 제 할일이나 똑똑이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핵의혹에 대해서 무슨 증폭 시킨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입니다.

핵 문제를 놓고 보면 오히려 의심스러운 것은 남측입니다. 그쪽에서 핵부재선언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핵무기를 남조선에 끌어 들이고, 배비하고, 그 사용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인 미국 자신이 한 구멍으로 안 벗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조선에 아직 미국에 핵무기가 있는가 없는가. 다 철수했는가, 철폐했는가 그것 아직 알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미국의 핵무기 저장고까지 건설했다는 문제가 엄연

한 사실인데, 발로 댔어요.

이런 상태는 30년 동안이나 핵 위협을 받아온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오늘도 가서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 가고 있습니다. 보시오, 귀측이 이번에 핵통제…….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 하자고 안 했는데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문제를 갖는 대표접촉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핵통제공동위원회 기능에 부속합의서 채택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무엇을 꺼려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시범사찰만 주장하면서 미국의 핵무기, 핵기지에 대한 사찰은 반대하는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혹을 가셔줄 수 없습니다. 외부의 위협을 공동으로 저지 시켜서 민족을 구원하자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한사코 그것을 반대하는가 그것입니다.

만약 그쪽에서 선언한대로 핵이 없다고 하면 무엇때문에 미국의 핵무기나 핵가지 사찰 문제를 갖다가 반대하겠는가, 왜 이것을 반대하겠는가, 반대한 의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게 없다면 시범사찰만 하자고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모든 사실을 놓고 볼 때, 귀측이 공연한 트집을 걸고 있다고 봅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의지도 없으면서 결국은 북남합의서 자체를 뒤집어 엮자는 것이고 우리 분과위원회 추진에 제동을 걸리자는 것으로 밖에

달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 정치분과위원회를 또 미국이 시키는대로 춤추는 이런 마당으로 전환시키자는 건가. 아니면 내부 사정으로 해서 이 회담장을 전략적으로 이용 할 그런 마당으로 만들자는 작전인가. 더는 핵무기에 대해서 우릴 절고 들고 자극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쾌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전은 이제 우리가 넘겨드리겠습니다. 요거 받으십시오.

남(이동복) : 감사 합니다.

북(백남준) :

〈북측 첫발언〉

이동복 위원장.

남측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6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된 《북남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구성된 정치분과위원회 제1차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얼마전에 온 겨레의 축복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된 제6차북남고위급회담에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이정표로 되는 역사적인 합의문건들이 발효된데 이어 그 후속조치로서 분과위원회들이 구성되고 첫 번째로 정치분과위원회 제1차회의가 개최된것은 합이서이행을 위한 길에서일보 전진한 또하나의 뜻깊은 일로 됩니다.

하기에 지금 온 거래는 북남합의서가 발효된지 20일만에 그 이행을 위한 첫 작업으로서 북남정치분과위원회 제1차회의가 개최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못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사업이 순조로이 진척되어 좋은 결실을 맺음으로써 북남공동의 통일촉진강령인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지기를 마음속으로부터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쌍방 위원들은 거래의 이러한 부푼 기대와 현실적 요구에 맞게 내외에 선포한 합의서에 높은 민족적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며 북남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를 잘 운영하여 자기에게 부과된 숭고한 사명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쌍방이 다같이 동족으로서 화해하고 단합과 통일을 위해 함께 나가자고 다짐한 이 마당에서 우리 북과 남은 실지로 대결과 분열의 과거와 결별하고 화해와 통일로로의 새출발을 하여야 합니다.

북남화해는 불가침과 함께 북남합의서의 기본핵으로 되고있으며 끊어졌던 민족의 피줄을 하나로 이어놓고 잃어버렸던 민족사를 되찾는 길, 자주적평화통일의 넓은길과 직접 잇닿아있습니다.

북과 남이 화해하고 온 민족의 단합이 이룩되면 그것이 곧 우리가 바라는 조국통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정치분과위원회에서 토의하게 되는 문제들은 북남합의서의 전도를 좌우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관건적인 문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남사이에 화해를 이룩한다고 할때 그것은 곧 북남사이의 정치적대결상태를 해소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나 명백한바와 같이 북남사이의 정치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화해를 이룩함이 없이는 다른 이여의 모든 문제들을 순조롭게 풀어나갈 수 없는것입니다.

북과 남이 지금처럼 군사적으로 침예하게 대치해있는것도 따지고 보면 서로 적대시하는 정치의 소산입니다.

따라서 쌍방이 정치적으로 대결의식을 버리고 서로 화해한다면 군사적대결해소문제는 쉽게 풀려지게 될것이며 반대로 정치적 화해를 떠난 군사적 긴장완화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협력, 교류문제도 정치적대결이 침예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 속에서는 잘 될래야 잘 될수 없으며 설사 부분적으로 몇건의 교류가 이루어진다해도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될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북남대화와 교류, 래왕실태가 그것을 응변으로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정치분과위원회에서 협의해결하게 될 화해문제가 북남사이의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데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북남합의서의 다른 분야들의 이행전도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된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방위원들은 정치분과위원회에 부과된 사명과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통일문제해결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놓는

데 응당한 기여를 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북남합의서의 《제1장 북남화해》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치분과위원회가 해야 할 사업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말하려고 합니다.

먼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북남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북남 정치분과위원회에서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제1장 북남화해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하고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부속합의서를 어떤 원칙에서 작성하며 거기에 북남합의서이행대책을 어느정도로 구체화하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우리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부속합의서를 북남합의서에 충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정치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하게 되는 부속합의서는 어디까지나 북남 합의서의 화해부문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것이지 그 어떤 다른것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속합의서에는 북남합의서의 의미와 요구가 정확히 구현되어있습니다.

화해부문의 어느한 조항도 버리거나 놓친 것도 없으며 제1조부터 제8조에 이르는 매 조항들을 순차와 내용에 따라 조화롭게 세부항목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번 부속합의서를 분과위원회의 권능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이미 쌍방합의에서 명백히 된바와 같이 분과위원회는 고위급회담의 테두리안에 있는 협의기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협의기구인 정치분과위원회의 사명에 맞게 북남합의서의 화해에 관한 합의를 이행하는데서 제기되는 대책적문제들이 반영되도록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북남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을 위한 실행기구가 나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극히 세밀적인 실무적인 문제들은 이행기구에서 협의하고 이행도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부속합의서에 이행기구인 북남정치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할것을 예상하였습니다.

귀측도 아는바와 같이 북남합의서의 제2장 불가침과 제3장 협력, 교류부문에서는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의서발효후 3개월안에 각각 자기 부문의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북남합의서의 제1장 북남화해부문에서는 이행기구인 공동위원회를 내오는 문제가 예견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북남합의서의 화해부문에 이행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문제가 예견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북남정치공동위원회와 같은 공동의 기구를 내오지 않는다면 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합의를 채택하여 발효시켰다고 해도 그것을 이행할수 없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침과 협력, 교류부문에서 공동위원회들을 내오는 것처럼 화해부문에서도 이행기구인 북남정치공동위원회를 내오는것이 순리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북남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우리의 부속합의서(초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북남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초 안)

북남고위급회담 정치분과위원회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북남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대책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의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① 북과 남은 상대방에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지 않는다.
- ② 북과 남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모든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한다.
- ③ 북과 남은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찬양하는 언론, 출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2조 북과 남은 상대방의 내부분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① 북과 남은 서로 상대측의 정치, 경제, 사회질서와 관습들을 존중한다.

② 북과 남은 자기의 의사를 상대측에 강요하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는다.

① 북과 남은 관영, 민영을 막론하고 어떤 언론기관이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는다.

② 북과 남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않는다.

③ 북과 남은 상대방을 자극하며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일체 선전을 하지 않는다.

④ 북과 남은 상대측지역에 대한 삐라살포와 전연방송을 중지하며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표어를 비롯한 모든 게시물들을 제거한다.

⑤ 북과 남은 상대방과의 대결을 고취하는 일체 정치행사를 하지 않는다.

제4조 북과 남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①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형태의 테로, 정탐, 폭력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행위를 부추기는 선동을 하지 않는다.

③ 북과 남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그 어떤 세력이나 집단의 행위

에 가담하지 않는다.

제5조 북과 남은 현 정전상태를 북남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화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① 북과 남은 1953년 7월 27일부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② 북과 남은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③ 북과 남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킨다음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 보장할 공동기구를 구성, 운영한다.

제6조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① 북과 남은 대외활동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전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의하고 대처한다.

② 북과 남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회의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북과 남은 국제적인 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하여 유일 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다른 나라들의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⑤ 북과 남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개정 또는 폐기한다.

⑥ 북과 남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공동으로 옹호하고 보호한다.

제7조 북과 남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판문점에 북남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판문점북남연락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제8조 북과 남은 북남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하여 북남정치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북남정치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제9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수 있다.

제10조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총리가 서명하여 교환한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월 일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연 형 목

정 원 식

보는바와 같이 우리측의 부속합의서(초안)은 분과위원회의 사명과 권능에 맞게 내용이 너무 일반적인것으로 되지도 않고 반대로 너무 실무화되지도 않고 합리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상에서도 북남합의서의 북남화해부문에 명기된 매 조항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측이 제시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북남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초안)이 정치분과위원회의 부속합의서로서 손색이 없다고 보면서 귀측의 긍정적호응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북남정치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초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북남정치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 의 서

(초 안)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북남사이의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북남정치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북남정치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북남정치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북남정치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장(장관)급으로 하며 부위원장,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③ 쌍방은 북남정치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④ 수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절할수 있다.

⑤ 쌍방은 북남정치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수 있다.

제2조 북남정치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북남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이하 부속합의서라 함〉을 실천하기 위한 시행세칙을 작성한다.

② 부속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한 시행세칙에 따라 북남합의서 화해부문의 이행을 추진한다.

③ 부속합의서 이외에 북남화해를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필요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실행할수 있다.

제3조 북남정치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북남정치공동위원회 회의는 1년에 3회정도 개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임의의 시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북남정치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평양, 서울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수 있다.

③ 북남정치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 북남정치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수도 있다.

⑤ 북남정치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대측지역을 래왕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담보,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⑥ 북남정치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북남정치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북남정치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북남정치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위원장이 각기 합의문건에 서명한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문건은 쌍방 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합의문건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발효할 수 있으며 이경우 북남정치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하는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월 일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대한민국 국무총리
연 형 득	정 원 식

북남정치공동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귀측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북남정치공동위원회 위원장급수를 부장(장관)급으로 하고 부위원장직제를 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남정치공동위원회가 북남고위급회담 외적인 이행기구로서 용당

한 권능을 가지고 북남합의서의 화해와 관련한 제반실무적문제들을 처리해 나갈수 있게 하자는데 있습니다.

북남정치공동위원회에 부위원장직제를 두기로 한 것도 실무집행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행력을 강화하고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에도 그 권한을 대행하여 공동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자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둘째로, 북남정치공동위원회 운영을 년 3회정도로 정례화할것을 예견하고있는것입니다.

북남정치공동위원회는 북남화해에 관한 합의사항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하는것만큼 한두차례의 운영으로 자기존재를 마칠수 없으며 전망성있게 그 운영을 미리 일정한 주기로 정례화하도록 해놓는것이 협의에서 번거로움을 피하고 사업편의를 보장하며 집행을 합리적으로 하는데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기로서 년 3회정도가 합당하다고 보고있으며 그렇게 해도 공동위원회가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공동위원회가 정례화되게 되는 조건이라면 전망적인 계획을 가지고 합의서이행과 관련한 문제들을 시행해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북남정치공동위원회안에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수 있게 한것입니다.

북남합의서를 실천에 옮기는 사업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한 사업이며 실무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제한된 시간내에 개최되는 공동위원회에서 세세한 실무적문제들까지 다 걷어안고 처리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들에 한해서는 공동위원회 테두리안에 실무협의회를 두고 거기에서 맡아 처리하도록 하면 공동위원회가 자기의 기능을 다 원만히 수행하고 북남합의서를 더 잘 이행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판문점 북남연락사무소 설치문제입니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는 쌍방이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합의서 발효후 3개월안에 판문점에 북남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 제2조 3항에서는 판문점 북남연락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정치분과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치분과위원회에서는 마땅히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문제도 토의되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쌍방합의에 부합되게 그리고 어떻게 하나 다가오는 5월의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판문점 북남연락사무소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약정된 기한내에 판문점 북남연락사무소가 설치되어 운영될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한 우리의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입니다.

판문점북남연락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합 의 서

(초 안)

북과 남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쌍방사이에 연락업무를 맡아 수행할 판문점북남연락사무소(이하 북남연락사무소라 함)를 설치, 운영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북남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북남연락사무소는 북과 남에서 각각 소장 1명과 연락대표 6명으로 구성한다.

② 북남연락사무소 소장은 국장 또는 부부장(차관)급으로 한다.

③ 북남연락사무소 연락대표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④ 북남연락사무소에는 각기 필요한 수의 보장성원을 둘수 있다.

제2조 북남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쌍방사이에 제기되는 연락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임에 따라 북남합의서이행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③ 북남합의서이행단계에서 북과 남으로 오고가는 인원, 차량 물자의 판문점 및 군사분계선 통과와 관련한 제반사업을 주관한다.

④ 북과 남의 정당, 단체 및 개발적인사들사이에 주고받는 편지를 비롯한 문건들과 물품 등의 교환업무를 위임에 따라 맡아한다.

제3조 북남연락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북남연락사무소는 북측에서 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에, 남측에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 위치한다.

② 북남연락사무소의 성원들사이의 연계는 접촉 또는 전화를 통하여 진행한다.

③ 북남연락사무소 운영시간은 매일 9시부터 16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12시까지로 한다.

일방이 요구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절할수 있다.

일요일은 휴식일로 하며 민족적명절을 비롯하여 북과 남이 각기 제정한 공휴일은 일방의 통지에 따라 휴식일로 한다.

④ 북남연락사무소는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판문점 북측지역 《판문각》과 남측지역 《평화의 집》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북남연락사무소의 직통전화선은 현재 북남사이에 설치되어있는 전화선가운데서 2회선을 이용한다.

제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수 있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1992년 월 일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대한민국 국무총리

연 형 목

정 원 식

우리가 제기한 《판문점 북남연락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합의서》(초안)은 북남합의서에 철저히 준하면서 동시에 북남연락업무와 관련된 기존관례와 현실적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한것으로써 북남연락사무소가 자체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판문점 북남연락사무소가 구성, 운영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존재하여온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귀측도 아는바와 같이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는 쌍방 적십자단체들사이의 합의사항에 따라 70년대초부터 설치, 운영되어왔고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치되는 판문점북남연락사무소가 북과 남의 당국은 물론 정당, 단체 개별적인사들의 전반적 연락업무를 위임에 따라 맡아해야 하는것만큼 여기에서 적십자단체들의 연락업무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것은 문제점이 있는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번거롭게 같은 장소에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를 따로 둘 필요가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귀측에서 이처럼 여러모로 합리적이며 공정한 판문점 북남연락사무소의 설치, 운영과 관련한 우리의 합의서초안에 다른 의견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부속합의서작성문제, 정치공동위원회 구성, 운영문제, 판문점 북남연락사무소 설치, 운영문제 등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말씀드렸

습니다.

남측위원 여러분.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분과위원회사업의 첫막을 올린 우리 쌍방 위원들의 어깨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이제 북남사이에 이룩된 역사적인 합의들이 어떻게 이행되는가 하는것은 그 첫시작으로 되는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와 책임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사고와 실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북남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이제 북과 남은 더는 《적》도 아니고 《남》도 아닙니다.

냉전대결의 시대는 멀리 지나갔으며 지금 우리는 화해와 단합의 역사적인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있습니다.

북과 남은 이러한 시대적변화에 상응하게 모든 사고와 실천에서 상대방을 《적》으로가 아니라 운명을 같이하는 동족으로, 상대방을 《남》으로가 아니라 갈라져 살수 없는 한 피줄을 나눈 혈육으로 보는 인식의 대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분과위원회사업의 순조로운 진전과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비결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과 남이 서로 합심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분과위원회는 쌍방사이에서 진행되는만큼 어느 일방의 노력과 힘만으로

는 잘 운영해나갈수 없습니다.

고장난명이라고 일방이 아무리 성의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여도 대방이 그에 보조를 같이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사업에서는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북과 남이 민족과 역사앞에 것처럼 훌륭한 합의문건들을 채택하여 발효시킬수 있었던것도 쌍방이 합심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었기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앞으로도 적극 살려나가야 할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분과위원회가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보다 행동을 중시하는 옳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백마디말보다 한번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북과 남은 지난 시기 화해와 완화, 평화와 통일에 대하여 좋은 말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북남합의서의 채택발효를 통하여 민족앞에 서약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 진가가 판별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들중 그 누가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 돌아가 하는 행동이 다르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한 말들이 모두 진실이 아니고 가짜임을 스스로 드러내보이는것으로 될것입니다.

부속합의서는 누구도 어길수 없는 공동의 서약문건입니다.

이 서약은 북과 남 어느 일방이 이행하고 싶으면 하고 이행하기 싫으면 그만두거나 자기에게 마음이 드는것만 골라서 이행해도 되는것이 아닙니다.

쌍방 합의서이행에서는 사소한 태공도 흥정도 이용될 수 없습니다.

쌍방은 북남합의서이행의 의무성을 깊이 자각하고 말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럴때라야만이 우리 분과위원회사업이 본연의 사명에 맞게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이 다같이 이러한 점들에서 인식을 같이한다면 제기된 과제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해도 해결하지 못할것이란 없으며 능히 빠른 시일안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갈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나는 오늘 북남합의서이행을 위한 첫 사업으로서 정치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가동을 시작한데 대하여 다시금 만족을 표시하면서 민족의 기대와 염원에 맞게 상정된 모든 문제들에서 훌륭한 합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이동복) :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백위원장 말씀을 이렇게 들어 보니까 아무리 내가 길게 얘기하려고 해도 북측의 말씀하시는 것보다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오늘 회의 사회를 제가 진행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오늘 준비하신 첫 발언을 말씀하시기 전에 핵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우리쪽에서 첫 발언에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를 얘기한데 대한 귀측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이해 했고 또 우리 백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결국 그동안에 핵통제공동위원회 문제를 가지고 판문점에서 모이고 있는 대표접촉에서 귀측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또 그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쪽에서 표시한 관심에 대한 북측의 일정한 의견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쪽에서 첫발언을 말씀드렸고 또 이제 지금 백위원장께서 북측의 첫 발언을 말씀하셨는데.

그 첫발언의 내용에 몇가지 새로운 제안과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령 부속합의서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또 남북정치공동위원회에 관한 제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쪽에서 제안했던 남북연락사무소 구성·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안이 귀측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쪽에서 이렇게 제의를 할까 싶습니다. 우리쪽에서 첫발언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지금 백위원장께서 북측의 첫발언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서로 여러가지로 연구를 필요로 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토의하지 말고 피차 상

대측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조금 연구해서 그 문제는 이 다음 제2차회의 때부터 여러가지 토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회의의 능률을 위해서 좋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으로 위임을 받고 있는것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는 남북연락사무소라고 그랬고 귀측에서는 판문점 연락사무소라고 그래서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여러해를 두고 판문점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어온 연락기능을 우리가 고위급회담의 테두리로 수렴을 해서 이것을 이제 제도화하는 뜻을 갖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동안 해오던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크게 남북 쌍방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점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이 문제는 5월달에 열리는 7차고위급회담에서 매듭을 지어 가지고 발족을 시켜야 되니까요. 5월 19일까지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시간에 쫓김을 받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다른 문제는 이 다음 회의로 미루기로 하고 연락사무소 문제를 가지고 오늘 조금 토의를 좀 더 할까요?

안그러면 여러가지 절약의 의미를 살리는 뜻에서는 한 두분정도 위원을 지명해서 그분들이 수고해가지고 우리 이 다음 2차회의 때, 통일각에서 하는 2차회의 때, 보고를 하게 해서 거기서 승인을 해가지고 7차고위급회담에 보고해서 이것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실천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후자의 방안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북(백남준) : 그쪽의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서 저는 이제 위원장이 말씀하는 것 대체로 동감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려야지, 내 주머니 차고 가면 안 되겠고.

우리 정치분과회의에서 핵문제와 같은, 아까 다른 합의서 이행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데, 이것은 사실 전제조건화 하는 건데 실제상 여기까지 그쪽에서 나와서 핵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정치분과위원회 앞에 난관을 조성하자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거론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그 쪽 발언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의 그 기능에서 가장 첫 자리에 놓고 가장 핵심으로 되어 있고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부속합의서입니다.

부속합의서인데 위원장이 이제 쪽 작성원칙과 형식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좋은 말씀을 그중에서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오늘 분과위원회 우리 첫 회의에서 그런 원칙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 2차회의 가서 그 다음에 합의서 안을 내놓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월 5일부터 열리게 되어 있는 7차회담을 어떻게 하시자는 것인지 대단히 나는 그쪽에서 소극적이다.

사실 우리 정치분과위원회 사업에 대해서 성의가 부족한게 아니냐 그

런 생각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남(이동복) : 불필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북(백남준) : 왜 쫓을 수가 없느냐, 오늘은 우리는 옹당 부속합의서는 가지고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이 말씀하는데 연락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합의라든가 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또 시간적 여유를 위해서 위원접촉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도 어떠냐, 두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엄격히 부속합의서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양쪽이 오늘다 『판문점연락사무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내놨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로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고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정치분과위원회에서는 부속합의서부터 탄생시켜 봐야 되는게 자기 기본사명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오시라 그런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한가지 먼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치화해부문 1장 부문에서 정치분과위원회를 내놓는데 대한 문제를 쌍방이 합의한 것은 현명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의기구로서 우리가 양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2장, 3장에서는 다 이행기구가 있는데 우리는 이행기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공동위원회를 내놓는데 대해서 제안 했는데

그쪽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이동복) : 한가지 정치분과위원회에 나오는 상대측 입장이 소극이다, 적극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백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불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지적만 하겠습니다.

북(백남준) : 사실에 기초해서 한 얘기입니다.

남(이동복) : 그 다음에 부속합의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내가 깊이 안 들어 가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은 첫발언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부속합의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첫 발언에서 귀측에서 이 문제를 다른 입장과는 아마도 우리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속합의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이 다음 2차 회의때 말씀을 드리겠어요. 또 말씀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쪽 부속합의서 문제에 대한 입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도 아시게 되실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라고 하는 아주 명문으로 되어 있는 합의서에 근거를 두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합의서의 명문규정에 근거를 두는데서 이탈을 하면요, 그 다음은 우리 분과위원회가, 배가 산으로 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오늘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공동위원회 문제는 사실은 공동위원회 문제와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가 『남북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문안을 다듬은 장본인들이 우리 백위원장과 나인데요.

그 당시에 공동위원회를 이 화해분야에 설치하지 않은데는 그 나름으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언급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문제도 우리가 논의합시다.

논의 하는데 화해분야 문제는 우리 입장은 공동위원회가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우리 의견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치분과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가장 우리가 중심고지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남북간에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도 있고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은 먼저, 이것은 같이 하는 부분은 정리하고 달리하는 부분은 토의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속합의서 문제하고 공동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쌍방간에 의견의 절충이 필요한 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절충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와는 달리 연락사무소는 아주 우리 기본법인 남북기본합의서에 시한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간에 엄숙하게 만들어낸 합의 사항을 우리가 지켜 나가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고 하는 입장에 설 때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구분을 할 줄 아는 지혜를 서로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합의서에 시한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그 기한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분의 합의서가 파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그런 명백한 일이 있는데, 지금 부속합의서나 또는 이 공

동위원회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볼모로 삼아 가지고 이것을 이유로 해서 연락사무소가 설치가 안되는 일이 나오는 것은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니까 내가 지금 다른문제보다, 다른것은 놓고 연락사무소 문제만 하자는데 아니예요. 연락사무소 문제는 시한이 이렇게 밝혀 있으니까 그 시한이 박혀 있는 것은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또 남북간에 그동안 해오던 일을,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을 거기다 제도화시켜 가지고 남북간에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의 인민들, 남의 국민들한테 뭔가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편지도 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이것은 나는 이견이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연락사무소 문제는 연락사무소 문제대로 다루고 또 다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문제가지고 서로 다른 입장이 개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해 가지고 절대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둘은 분리시켜서 그렇게 합시다.

북(백남준) : 그럼 내 한가지만 물읍시다.

지금 이번에 부속합의서를 이번에 내놓지 못 한 귀측의 입장에서는 다음 2차회의때에 알게 될 것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그것을 먼저 말씀해줄 수는 없겠는가요?

남(이동복) :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지요.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 각 분과위원회 가능은 다음과 같다. ①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해당 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그것은 분과위원회 임무예요. 우리가 그 대책을 협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②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해당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그 결과로서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책을 협의했습니까? 대책을 협의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말하자면 애를 가져야 낳지요. 애를 갖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낳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쌍방간에 합의해서 명문화 시켜놓은 조항예요. 그리고 그 협의한데 따라서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북(백남준) : 무엇인가 하면 해석 자체에서, 이해 자체에서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남(이동복) : 이것은 명문에 있어요.

북(백남준) : 제가 말씀 드리지요.

우선 무슨 문제가 결부되는가 하면 이 정치분과위원회에서, 말하자면 화해분야에서 이행기구를 내오느냐 안내오느냐 하는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선생님 말씀한 것 보면, 우리가 5월 5

일부터 열리는 7차회담에서 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남(이동복) : 그것은 우리가 교류·협력분야에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그 밖에 필요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게 되어있다. 이것은 교류·협력분야에 일단 말예요. 다음에 화해분야에서 그것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북(백남준) : 군사공동위원회도 그때 나오고.

남(이동복) : 군사공동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북(백남준) : 그렇지요.

남(이동복) : 그것은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약속대로 하는 것이고, 화해분야에서 그것이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조항에 대해서 평양에서 조문에 대해서 대표접촉 할 때도 그렇고 또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언급된게 없어요. 거론이 된게 없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론을 해야 돼요.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는, 남북간에.

북(백남준) : 그 거론하자는데 대해서는 긍정합니다. 그런데 거론하세요. 앞으로 토론합시다. 토론하는데 두 가지 점을 고려해주세요.

남(이동복) : 의견을 말씀하세요.

북(백남준) :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공동위원회를 7차 회담에서 발족시키게 되어 있는데, 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것은 이 공동위원회의 이행기

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행기구가 발족해서 이행기구가 자기사업을 하게 하자고 하면 제2장 불가침에 나오는 군사분과위원회에서는 부속합의서를 탄생시켜야 군사공동위원회의 일거리가 생깁니다.

또 화해, 협력분과위원회에서도 역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야 경제협력 위원회를 비롯해서 무슨 위원회들이 나오겠는데 그 이행기구들이 자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치분과위원회에서 정치공동위원회를 안내온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군사분야하고 그 다음 이쪽의 협력, 교류부문에 서 공동위원들, 이행기구들은 자기 사업을 다 해 나갑니다.

그러나 화해분야에서는 말하자면 이행기구가 없음으로서 부속합의서도 그때까지 작성 못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정치분과위원회는 담보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쌍방간에 정치적 대결을 해소하는 것,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는 것, 협력, 교류를 해소하는 것, 협력, 교류를 진행하는 것, 이것을 병진시켜 나가자고 하는 이런데 합의를 본 조건에서 그것하고 배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정치적 대결을 해소하는 문제,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는 문제, 협력, 교류문제, 이것은 우리 생각에는 정치, 군사가 앞섰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협력, 교류를 앞세우자는 입장이고 그래서 쌍방이 그때 이것 병진시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에서 정치분과위원회에서 이행기구를 안내온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병행이 못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정치공동위원회를 내오자고하는 그런 우리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이동복) : 그것을 서로 조금 정리하고 넘어 갑시다.

지금 우리 남북기본합의서의 화해분야에는 다른 불가침분야의 군사공동위원회나 교류·협력분야에 공동위원회라고 하는 실천기구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분과위원회도 화해분야도 다른 불가침이나 교류·협력분야와 병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행을 위한 공동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귀측의 의견이 오늘 처음 개진됐어요. 우리가 들었던 말이지요. 그것을 검토하겠어요.

북(백남준) : 그러면 이선생이 뭐인고 하면 예비회담 때부터…….

남(이동복) : 내 말씀 들어 보세요.

북(백남준) : 회의록을 다시 들추어 보셔야 되겠어요.

남(이동복) : 아니 화해분야에서는 우리가 그것 얘기한 역사가 없어요. 말씀 들어보세요.

북(백남준) :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동복) : 말씀 들어 보세요.

그런데 이 화해분야의 이행을 위해서 공동위원회와 같은 실천기구가 필요한지 필요치 않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봅시다. 검토를 해보는데 사실은 필요치 않을 수도 있고 필요 할 수도 있다고 나는 일단

가정을 해봅니다. 가정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우리가 설치하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검토를 해봅시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 남북기본합의서에 거기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귀측에서 돌연 그 문제를 갖다가 거론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연구해 보겠다고 하는, 연구해서 2차 회의때에 우리가 우리 태도를 알려드리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소극, 적극의 차원에서 이분법으로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은 점잖치 못 하십니다.

북(백남준) : 예, 또 반복하시겠소?

남(이동복) :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를 지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철칙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남북간에 의견을 달리 하는 문제가 튀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1차적으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명문조항에 따르자 말이지요. 거기에서 그 안의 명문 조항에 따라야 되고. 또 하나 이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공동선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한 합의문건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토의가 있었고 쌍방의 각기 다른 안들이 나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해서 만들어진게 지금 우리가 발효시킨 합의문건인데 이 발효된 합의문건을 생산시키는 과정에서 취하지 안 하기로 했던 것을 새로 가지고 나오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것은 또 하나의 원칙이다, 하는 것을 내 의견으로 말씀드리드립니다.

이것은 또 이 문제 가지고 여러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뒤에 논의하기로 하고 다만 오늘의 시점에서는 귀측의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를 할게요. 검토를 해서 2차 회의에서 그 문제에 대한 우리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북(백남준) : 그렇게 합시다.

북(최성익) : 한마디만 딱 얘기할게요.

이제 이동복위원장께서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이런 합의사항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내놓은 것하고 맞지 않는다는데 그것은 좀 해석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행대책을 협의해서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부속합의서를 내놓고 토론을 거쳐서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완성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이제 5월달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귀측에서 말하는대로 한다면 분과위원회를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겠는가.

남(이동복) : 최선생! 최선생 말씀하시는데…….

북(최성익) : 좀 내가 얘기 하는 것 들으십시오.

남(이동복) : 가만 계세요. 오늘 회의를 진행을 내가 해요.

북(최성익) : 들으십시오.

남(이동복) : 가만 계세요.

북(최성익) : 지금 내가 언권(言權)을 얻었는데.

남(이동복) : 가만 계세요.

북(백남준) : 얘기 끝난 다음에 하자. 들어주십시오.

북(최성익) : 두번째, 귀측에서 공동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대표접촉에 나와서, 탄생시키기 위한 대표접촉에 나와서 어떻게 했는가. 공동위원회를 두자, 화해부문에서 공동위원회를 두자는 그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회의록을 검토해 보십시오.

셋째로, 귀측에서 이제 핵사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간에 화해, 협력은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분명히 이동복선생이 기본 첫발언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우리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사명을 수행할 수 없게 이렇게 하자는게 아닌가, 여기에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로, 이게 북남연락사무소를 상대측 지역에 설치하자는 귀측의 안을 내놨는데 그것은 서울 회담때, 5차회담때…….

남(이동복) : 최선생, 왜 이렇게 앞뒤를 분간하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합니까? 지금 판문점 연락 사무소…….

북(최성익) : 서울 회담 때…….

북(백남준) : 가만, 한가지만 들읍시다.

남(이동복) :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토의하는 거예요. 지금?

북(최성익) : 들어 주십시오. 의견을 말씀합니다.

남(이동복) : 의견을 얘기할 때에 가서 해야지 지금 「판문점 연락사무소 설

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내용을 지금 토의하는 거예요?

북(최성익) : 귀측에서 합의사항에 어긋나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남(이동복) : 왜 이렇게 두서가 없이 애길하고 그래요.

북(백남준) : 사회가 의견을 막지 말고. 들어봅시다.

북(최성익) : 우리는 철저하게 합의 사항에 준해서 한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각기 자기측 지역에 설치·운영한다」는 것으로 다 양해가 되어 있고 토론이 되어있는데 마치나 우리가 합의사항에 준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남(이동복) : 알았습니다.

북(최성익) :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남(이동복) : 최선생, 알았는데. 지금 최선생 말씀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부속합의서에 관해서 영문으로 되어 있는 기본합의서의 내용, 아니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자 다시한번 읽어 보지요. 2조 1항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 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협의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협의해야지.

그 다음 2항,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 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이것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한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북(최성익) : 예, 말씀하지요.

남(이동복) : 이것 마음대로 달리 해석하실 작정예요?

북(최성익) : 말씀하세요.

남(이동복) : 그러니까 귀측에서 오늘 우리 백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내가 돌아가서 검토해서 말씀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최선생이 튀어 나와가지고, 이걸 그야말로 명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거를 갖다가 그 엉뚱한 해석을 합니까?

북(최성익) : 무슨 엉뚱한 해석이예요? 이게 맞지요.

남(이동복) : 뭐가 맞아요?

북(최성익) : 합의서에 맞지요.

남(이동복) : 그것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북(최성익) : 아니, 합의서에 맞습니다. 우리.

남(이동복) : 됐어요, 됐어.

북(백남준) : 저 이선생, 내 좀 말씀드립니다.

남(이동복) : 경우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북(백남준) : 이선생, 그래서 뭐인가 하면 그쪽에서 좀 이것 우리 분과위원회 첫회의 적극성이 좀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게…….

남(이동복) : 아니, 좀 내가 서운해요.

북(백남준) : 아니, 그건 일리가 있어 하는 소리예요.

왜 그런가, 이것 우리가 공동위원회를 내오는 문제를 우리 연구해서 거론하자고 하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것도 해야 될 문제다.

왜 그런고 하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7차회담전에 정치분과만은 그것을 안해도 된다 하는 그런 명문이 없습니다.

또 동시에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어디까지나 분과위원회는 협의기구로 쌍방합의서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정치분과라는 것은 이행기구가 없으면 앉아서 말공부만 하고 자꾸 협의만 했지 집행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런 점을 고려해서 더 연구를 해봐 주시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쪽에서 그 기본합의서 작성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한두가지 내가 말씀드릴거는 우선 무엇인가 하면, 무슨 문제있는가 하면 우리는 정치공동위원회를 내오는 경우에는 말하자면 그것외에 그 어떤 다른 공동위원회라는 거는 여러개를 산파시킬 필요없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점을 고려해주시요.

그 여러가지 그렇게 하자면 그 무수하게 나와야 됩니다. 대단히 번거러워지고.

그 다음 어떤 것은 먼저 실천하자, 이런 사항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이행기구에서 토론해서 쌍방이 이게 긴요하고,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자. 그것을 우리가 여유로 두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일반원칙으로는 돼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이제 말씀드릴거는 뭐인가 하면,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시는데 그쪽에서 그 아까 발언을 보면 별도의 합의서들을 분야별로 많이 만들거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거는 분과와는 관계 안되고, 군사분과나 이쪽 협력 교류분과의 경우도 그런데, 그렇게 할라고 하면 한달에 한번 하기로 되어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가지고 이것 7차회담에서 발효를 못 시킵니다.

그래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뭐인가 하면 판문점 연락사무소 있잖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거 있어요.

이것 다 앞으로 위원접촉에서 토론할거지만 장소를 갖다가 상대측 지역에다 둔다 이것은 우리 생각하고는 좀 차이납니다. 그렇게 고려해주시고.

남(이동복) : 알만합니다.

북(백남준) : 그 다음에 여기 인원 우리가 지금 10명인가, 11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토론해서 필요한 정도로 두면 되는거고.

그 다음에 여기 면회실, 우편물교환실, 뭐 전화교환실 이런 문제를 그 기구를 두겠다.

남(이동복) : 그건 토의해 보면, 앞으로 토의해 보면 돼요.

북(백남준) : 이젠 앞으로 이것 다 이것 이행하는 단계들에서 할 문제들이고, 그 다음 여기에 이런거 있습니다. 뭐 휴대폰에 대한 불가침을 인정한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젠 상대측에 두다보니까 그런 것 있겠지요.

이런 점을 거기서 좀 더 고려해주시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위원장께

서 아까 제안하신대로 우리가 이것 분과위원회를 한달에 한번 하게 되어 있는 조건에서 그렇게 하자면 이게 부지하세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접촉을 가지자는데 그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만 내 명백히 넘어가는데 다음 위원접촉에서 우선 부속합의서 작성에 들어가자. 이 판문점 연락대표부, 연락사무소를 내오는 문제를 그거를 제껴놓고 먼저하는 이런거는 하지 말고 순차로 부속합의서 토론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연락사무소는 우리가 7차회담전에 탄생시키면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점을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위원접촉을 하는데는 이제 이동복위원장 말씀했는데 위원 2명 했으면 좋겠다. 그건 반대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도 2명 합시다, 2명하고. 장소는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하자.

남(이동복) : 좋지.

북(백남준) :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위원접촉 날짜를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있습니다. 그건 말씀해 보시죠, 안이 있으면.

남(이동복) :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백위원장 말씀을 말씀 들으니까 우리 이 부속합의서 문제를 가지고 이 다음회의 때에 여러가지 우리가 흥금을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네요.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선 「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내용은 그전에 정리해놓으면 돼요. 그전에 정리해놓고. 가령 그문

제를 가지고 부속합의서하고 이렇게 연계시켜서 만일 꼭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건 그때 또 논의합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건 준비를 해둬야 되니까 그 이다음 회의에 앞서서 각기 쌍방에서 두분씩의 위원하고 두분씩의 수행원으로 한두차례, 뭐 별거없어요, 이 「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내용을 정하는 것은. 그래서 가서명만 하면 되니까 위원들이.

북(백남준) : 어느거요?

남(이동복) : 그 「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조정해서 쌍방간에 이런 내용으로 조정했다 해가지고 소위 참가했던 위원들이 가서명만 하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이다음 회의때 우리가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이 다음 회의전에 그내용을 그렇게 만들어 둔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위원접촉을 좀 가까운 시일안에 갖죠. 뭐. 제가 날짜를 말씀드릴까요?

북(백남준) : 말씀하세요.

남(이동복) : 말씀드릴까요?

북(최성익) : 지금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백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 우리 이위원장께서 말씀하신게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접촉을 하는데 백위원장께서는 부속합의서…….

남(이동복) : 아니, 그건 차이가 없어요. 그것은 이 다음 회의때 우리가 얘기할테니까 그건 그때 가서, 지금은 우선 연락사무소 문제죠. 다음주 초

나, 다음주 초쯤 하면 어떻습니까?

북(백남준) : 다음주 초는…….

남(이동복) : 다음주 초가 16일부터 22일까지인데 지금 3월 18일날 교류·협력분과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3월 17일쯤 좀 수고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북(백남준) : 그래서 날짜문제에 앞서서 이게 다음번 말하자면 위원접촉을 우리가 탄생시키는데, 이 연락사무소 구성, 설치·운영에 관한 그 합의서를 토론하자면 위원접촉이 필요없습니다. 그건 필요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이동복) : 그건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북(백남준) : 아니, 그건 이동복선생의 일방적인 말씀이고 어디까지나 분과위원회에서야 부속합의서를 토론해야지, 아니 무슨 연락사무소 내오는거야 그건 뭐 간단한건데, 그래서 부속합의서 대한 걸 토론하려면 위원접촉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 연락사무소만 토론하려면 위원접촉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 얘기했는데 이 부속합의서 문제를 왜 토론해야 되며, 왜 이런 이행기구가 필요하며, 왜 이 문제를 위원접촉에서 토론해야 하는건 내가 아까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해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접촉에 합의서를 토론 안 할려면 그럼 이게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토론하실려고 한다면 우리로서는 뭐냐하면 지금 군사분과는 13일날에 회의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일날 협력교류분과가 있

습니다. 회의가 있죠? 그 다음에 그쪽에서 24일날 아마 14대 총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 또 겹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가지 양쪽에 다 일
이 많은 조건에서 위원접촉을 하자면 3월25일날 위원접촉을 가지자. 가
져가지고서 오전, 오후해도 좋고 이틀, 3일 해도 좋은 것이고, 그건 우리
가 고려를 해보겠는데. 25일전에는 좀 힘들어요, 힘들고. 그렇게 합시다.

남(이동복)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속합의서 문제는 남북간에 정식으로
합의해서 발효시킨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명문
조항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냐, 또는 그것을 갖다가 왜곡시켜서 해
석하느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안되고, 또 이 문제
는 오늘 우리가 예상치도 않았는데 귀측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나왔으
니까…….

북(백남준) : 아, 그건 예상치 않는게 아니에요.

남(이동복) : 그렇지 않아요.

북(백남준) : 6차회담에 있지 않았습니까?

남(이동복) : 그렇지 않아요.

북(백남준) : 아니, 6차회담 때 임동원대표하고 나하고 얘기 있었어요.

남(이동복) : 그건 임동원대표하고…….

북(백남준) : 임동원대표도 정치공동위원회를 내올 필요성을 인정했고.

남(이동복) : 그렇지 않아요. 임동원대표하고 귀측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사담이에요. 그것은 전혀 우리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요.

북(백남준) : 왜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그쪽 사람인데.

남(이동복) : 아, 그것은 임동원대표하고 사담을 나눈걸 가지고, 아까 아마 최위원도 지금 보니까, 내가 이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나, 내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람인데 나는 그런 얘기 들어 본적도 없고.

북(최성익) : 아니, 우리 안을 넘겨준 데에 있습니다. 문건으로도 있습니다.

남(이동복) : 그건 그렇지 않아요.

북(최성익) : 그 회의록 한번 들쳐보세요.

남(이동복) : 그렇지 않으니까.

북(최성익) : 문건에 있습니다.

남(이동복) : 그래서 그걸가지고 근거를 삼으시면 안되고. 이 부속합의서 문제는 우리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명문조항에 있는 말을 들면 안 돼요. 이걸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이거를 불모로 삼아가지고 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 문제를 기일내에 매듭을 짓지 못하는 사태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책임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귀측에서 잘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입장에 입각해 가지고 위원접촉을 연락사무소 문제에 관해서 하지 못하시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귀측 책임하

에서 그런 입장을 고수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거듭 내가 촉구하는 것은 적어도 이 다음 우리 분과위원회 2차회의에 앞서서 이 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 문제를 실무적으로는 매듭 짓는 것이 이 남북대화, 남북관계를 또 우리 분과위원회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만드는 일이라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이라도 좀 태도를 바꿔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우선 그렇게 놓고, 이 다음 2차회의의 날짜를 어떻게 하실습니까?

북(백남준) : 2차회의의 날짜는 우리, 초청측이니까 우리가 불러봅시다. 불러보는데 거기에 앞서서 지금 그 명문조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북남 우리 기본합의서하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지적된 그 기능하고 이것을 이렇게 거두절미하시지 말고 말씀입니다.

남(이동복) : 아니, 거두절미 안해요.

북(백남준) : 아니, 종적으로 횡적으로 다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쌍방 예비회담으로부터 본회담에 이르기까지 회의록들 다 보시면 모든게 다 병행해 나가게 되어 있다. 병진돼 나가게 돼 있다. 그런 점도 고려하십시오.

위원접촉 자체를 말하자면, 안 하겠다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로서는 판문점 북남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때문에는 위원접촉

이 그렇게 필요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결국 무엇인가하면 우리가, 정치분과위에서 위임을 받아서 그것을 협의하게 돼 있는거지 우리 분과위원회 기본사명은 아니다. 기본사명의 하나는 되지만 기본은 아니다. 기본은 어디까지나 부속합의서를 협의하는거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으면 위원접촉을 하고요. 그저 판문점 연락사무소 문제만 협의할라하면 위원접촉이 이렇게 필요없겠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남(이동복) : 알았어요.

북(백남준) : 그 다음에 제2차 분과위원회 회의는 저희들 생각은 우리 초청측이니까 부르겠는데 3월 31일날. 수요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렇게 되는데.

남(이동복) : 수요일 쯤 될 겁니다. 3월 31일날.

북(백남준) :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인가? 화요일.

남(이동복) : 이게요, 저희 의견도 좀 얘기를 해 볼까요?

북(백남준) : 말씀하시죠.

남(이동복) : 우리가 이제 5월 5일부터 8일까지 7차 고위급회담이 열리게 예정돼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날짜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 군사 그리고 이제 교류·협력분과위원회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분과위원회를 합니다. 그래도 이 3개 분과위원회는 정말 균형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 말이지. 균형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 말이지.

북(백남준) : 그건 균형 맞추면 돼.

남(이동복) : 그러니까 5차 고위급회담이 열리기전에 정치분과위원회가 세번의 회의를 하면 군사도 세번의 회의를 했으면 좋겠고, 교류·협력분과위원회도 세번의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원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백남준) : 우리 생각에는 그것도 이제 위원접촉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한달에 한번씩인가 하는 분과위원회만 마주 앉아서 해결되나요? 이제 5월5일이라는 거야, 뭐인가 하면 기혼적으로 밖에 할 시간이 없어요.

남(이동복) : 그건 이제 우리가 이 다음 회의에서 얘기를 할테니까, 지금 거기 들어가지 말자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거를 그려해서 3월31일 보다 조금, 한 3, 4일 앞당기면 어떻겠습니까? 3월27일 정도로.

북(백남준) : 27일?

남(이동복) : 예.

북(백남준) : 3월27일이면 무슨 날인가?

남(이동복) : 금요일인데.

북(백남준) : 반대없어요. 그렇게 합시다.

남(이동복) : 3월27일날 합시다.

북(백남준) : 예, 그렇게 합시다. 3월27일.

아이고! 수고했수다.

남(이동복) : 아니, 뭐 백선생하고 우리가 그동안 이룩해놓은 것이 많은데 완성을 해야지

자, 그러면 날짜도 합의했고, 오늘 이렇게 일곱분의 쌍방 위원들이 첫 모임을 갖고 얼굴을 마주 대했을 뿐만 아니라 또 남북기본합의서의 화해 분야를 성취해 나가는데 쌍방이 생각하는 바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는 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만 끝내고 3월 27일날에…….

북(백남준) : 그렇게 합시다.

남(이동복) : 또 반갑게 「통일각」에서 만나서 우리 토의를 계속 합시다.

북(백남준) : 아주 사회가 오늘 잘 집행했어요. 잘 집행했는데 마지막에 남의 언권(言權)을 강권(強權)으로 누를려니 그것 되겠나?(웃음)

남(이동복) : 자, 수고했습니다.(웃음)

북(백남준) : 수고했습니다.

〈쌍방대표 인사교환 후 퇴장〉

〈附 錄〉

우리측 委員長 記者會見

우리側 委員長 記者會見

- * 일시 : 1992. 3. 9 (월), 13 : 05 ~ 13 : 30
- * 장소 : 판문점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 기자회견실
- * 발표 : 이동복 위원장

〈기자 회견문〉

오늘 정치분과위원회 제1차회의가 있었습니다.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계속된 것 같은데, 첫날회의는 기본적으로 저와 북측의 백남준위원장이 각각 첫발언을 통해가지고 남북기본합의서 중에서 화해분야를 이행·준수하는데 관한 기본입장을 표명한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늘 회의의 분위기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긴장을 느끼게 하는 분위기가 되었던 것이 우리측의 첫발언에서 핵문제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급한 것은 북측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내외의 일반여론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많은 의혹을 갖고 있고 그러한 의혹을 생각한다면 즉각 남북이 이미 합의한 남북핵사찰이라든가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국제핵사찰을 수락함으로써

해서 그러한 의혹을 씻어줘야 되는데 자꾸 이 문제를 차일피일함으로 해서 오히려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북이 성의를 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영향이 있고 또 남북대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북측의 백남준위원장이 모두의 발언에서 준비한 첫발언문을 낭독하기 전에 굉장이 반발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반발의 내용은 사실은 제가 그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만 판문점에서 별도로 열리고 있는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을 위한 대표접촉에서 하는 얘기를 일자 일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되풀이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네들 존엄성에 침해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텐데 우리가 자기네들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고 모독을 했다 해가지고 상당히 반박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기했던 의혹을 푸는 쪽으로 무슨 얘기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남준위원장이 첫발언이 있었는데, 우리측의 발언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백남준위원장이 읽은 첫발언의 요지를 요약하면 지금 화해분야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고 준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의 기능조항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

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항에는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해당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그 결과로서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해석을 해도 먼저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하고 그 협의의 결과로서 부속합의서 작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부속합의서를 초안으로 만들어서 어떤 내용으로 내놓았느냐 하면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북남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초안)」 이래가지고 전문 10조의 합의서 초안을 내놓았는데, 이 내용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제1장 화해분야를 완전히 되풀이 하면서 그 합의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북쪽이 철회했던 것을 전부 되살려 놓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양보했던 것 또는 철회를 당했던 것을 되살리는 목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의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이래놓고, ①항 「북과 남은 상대방에게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지 않는다」. 제②항 「북과 남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모든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한다」. ③항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②항이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모든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한다』 이것은 그 때 철회했던 것이죠.

③항은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찬양하는 언론, 출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래놓고.

2조에는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하는데 대해서 ① 『상대측의 정치, 경제, 사회질서와 관습들을 존중한다』 ② 『자기의 의사를 상대측에 강요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외세의 온갖 내정간섭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3조에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영, 민영을 막론하고 어떤 언론기관이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방을 비난, 중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②항에 『상대방에 대한, 특정인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③항에 『상대방을 자극하며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고취하는 일체의 선전을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④항에 『상대측 지역에 대한 삐라 살포와 전연방송, 이것은 전선방송입니다, 전연방송을 중지하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측을 자극하는 표어를 비롯한 모든 게시물을 제거한다』. 그리고 ⑤항에서 『상대방과의 대결을 고취하는 일체의 정치행사를 하지 않는다』.

그다음 이제 4조에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①항으로 『상대방에 대한 모든 형태의 테러, 정탐, 폭력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항에 『상대방에 대한 파괴 전복행위를 부추기는 선동을 하지 않는다』.

③항에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그 어떤 세력이나 집단에 가담하지 않

는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합의서 5조를 해설하는데 있어서는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화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그래서 남북사이를 속 빼버리고 평화협정이란 표현을 씬으로 해서 미국과 이것을 다루겠다 하는 의도를 여기에, 그리고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킨 다음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 보장할 공동기구를 구성·운영한다」 이것은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조에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①항으로 「대외활동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전민족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협의하고 대처한다」 이것은 괜찮겠습니다만 ②항으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회의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 참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③항으로 「국제적인 행사들에 전민족을 대표하여 유일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④항으로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다른나라들의 일체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⑤항으로 「다른 나라들과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개정 또는 폐기한다」. ⑥항으로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공동으로 옹호하고 보호한다」.

그리고 7조의 연락사무소를 우리는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라 그래서 내 봤는데, 이 사람들은 「판문점 북남연락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라고 해서 이것을 내 봤습니다.

여기에 북측이 내놓은 「판문점 연락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내용에 부분적으로는 우리와 공통된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북과 남의 정당,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 사이에 주고 받는 편지를 비롯한 문건들과 물품들의 교환업무를 위임에 따라 맡아 한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남북연락사무소에서 설정하고 있는 여러가지 기능은 깡그리 그냥 묵살하고 순전히 연락심부름만 하는 기능으로, 지금 적십자 연락사무소 기능을 그대로 인수하는 정도의 문안으로 내왔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치공동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남북정치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라는 것을 또 내놨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보면 화해부문에는 공동위원회 설치 규정이 없습니다. 불가침분야에는 군사공동위원회가 있고, 교류·협력분야에는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부문별 실천기구로서 공동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해분야에 공동위원회 설치 문제를 우리가 다루지 않은 것은 1조부터 4조까지는, 이것은 남북이 선언적인 조항들이예요. 내부적으로 취할 조치들을 담은 겁니다.

그다음에 5조는 이것은 소위 남북간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놓을 문제를 함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6조는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경쟁을 중지하고 협력한다』 하는 것은 별도의 부속합의서에 의해서 다뤄질 문제다. 이것은 공동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더라고 우리가 판단했고 7조

는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합의서를 합의할 때 남북간의 양해사항은 『화해분야의 실천기구』는 연락사무소다. 불가침분야의 실천기구는 군사공동위원회다. 교류·협력분야의 실천기구는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그밖의 부문별 공동위원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치, 화해분야에도 공동위원회를 두어서 다른 분야와 균형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병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남북정치공동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자는 합의서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회의가 두시간 한 이십분 끈 가장 큰 원인은 이 부속 합의서가 『기본합의서』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명문 조항을 비추어 볼 때에 어떤 문제냐 하는데 대한 약간의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오늘 회의에서는 토론을 안 할려고 그랬어요. 저쪽에서 이 부속합의서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서 요다음 회의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사람들이 앞으로 남북분과위원회, 아마 다른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오늘 나온 것을 보면 군사분과위원회는 「군사분과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 초안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교류협력은 또 교류협력분야의 합의사항 이행대책에 관한 부속합의서」 이것을 내놓고 이 부속합의서가 합의 안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나갈 수 없다 하

는 입장을 오늘 밝힌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치분과위원회에서는 지금 5월 19일까지 남북이 하나의 의무조항으로 묶여 있는 것이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봐서 5월 19일까지 연락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7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 발효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하자, 그래서 위원접촉, 쌍방이 각기 한 2명 정도의 위원을 내가지고 곧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접촉을 갖고 이 문제를 매듭을 짓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절대로 그건 안된다. 부속합의서를 먼저 토의하는 위원접촉은 가능해도 그것이 안되는 한 「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토의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한참 설왕설래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경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 했고 따라서 「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 문제도 오늘은 서로 초안을 설명한 것 이상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다음 2차회의는 우리 생각에는 5월 5일날 열리는 고위급회담 전에 한 세차례정도의 분과위원회 회의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분과위원회가 서로 시차를 두고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면 정치분과위원회는 조금 앞당겨서 요다음 열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북측에다가 날짜를 좀 내놔라 그랬더니 3월 31일을 내와서 그것 좀 앞당기자 그래가지고 3월 27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2차회의는 3월 27일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회의의 결과, 조금 우리를 긴장시키는 것은 평양에서 연형묵총리가 앞으로 남북대화 운영에 관한 원칙으로 「일괄합의·동시실천」 원칙을 애길 했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때문에 추궁을 못했죠. 그래서 요다음 회의때 얘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백남준 위원장도 「일괄합의·동시실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자기네 원칙이다 하는 것을 거의 명백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정치분과위원회에서도 「부속합의서, 정치공동위원회, 그다음에 연락사무소 설치·운영 합의서」 세가지의 합의서가 동시일괄합의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은 더이상 왈가왈부할 시기가 아니라서 2차회의때부터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를 긴장시킨 것은 오늘 저쪽의 의도로 봐서 결국 각 분과위원회마다 북측이 내놓은 어떤 입장을 앞세워가지고 대화의 실질적인 어떤 진전과 가시화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구체화는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핵문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회담의 진전과 관련해서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뭐 의문나시는 것 있으면 좀...

〈질문·답변〉

질문 : 우리쪽이 부속합의서를 기본적으로 논의하자는 것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 예, 부속합의서는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규정 이 돼 있는데요,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먼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각 조항별로. 그리고 합의되면 부속합의서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북측에서 내놓는 부속합의서는 합의돼 있는 합의서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합의되기 이전에 교섭단계에서 북측이 내놨다가 철회한 문제들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죠.

질문 : 그럼 지금 내놓은 합의서를 갖다가 더 수정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 놨습니까? 아니면.....

답변 : 우리쪽 것 말씀인가요?

질문 : 아니, 북측이 내놓은.

답변 : 아니, 저쪽은 그런 얘기가 없었고요, 저쪽이 내놓은 부속합의서는 우리가 거론할 상대가 아니예요.

그것을 그렇게 합의해 버리면 이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기본합의서를 우리가 스스로 반기하는 결과가 되니까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죠.

질문 :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말씀은 논의의 방식, 그리고 내용 이 두가지

인 것 같은데요, 논의의 방식이라는 것은…….

답변 : 논의의 방식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고, 내용으로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죠. 논의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대책을 먼저 협의하고 협의한 결과에 의해서 부속합의서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건 완전히, 이것은 우리가 북측이 내놓은 안을 토의에 옹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2조 1항과 2항을 우리가 사문화 시키는데 동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 내용은 우리가 이미 버리기로 한 내용을 다시 상정할 수가 없죠.

질문 : 정치공동위원회도 우리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까?

답변 : 정치공동위원회 문제는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질문 : 화해분야에서 공동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것, 또 연락사무소가 그 실천기구로서 한다는 것이 아까 양해사항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답변 : 아니, 양해사항이 아니고 연락사무소가 화해분야의 다른 조항의 실천기구는 아니에요. 연락사무소는 연락사무소로서의 기능만을 갖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합의를 채택할 때 각 1장 화해분야, 2장 불가침분야, 3장 교류·협력분야에 실천기구가 하나씩, 말하자면은 그때 실천기구는 남북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실천기구를 하나씩 우선 본 조문에다 합의해 둔다 하는데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류·협력분야에서는 경제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됐던 것이고 군사분야에선 군사공동위원회가 거론이 됐던 것이고 화해분야에

서는 남북연락사무소가 그 화해분야에서 시범적인 실천기구로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조부터 4조까지는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공동위원회가 과연 필요하느냐,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것은 새로이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겠어요.

질문 : 우리측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단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기한 내에 설치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추진사항이라고도 보여졌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됐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됩니까?

답변 :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기일내에 설치한다는 것은 그것이 화해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이라는 뜻은 아니예요. 화해분야에서 연락사무소는 지금도 적십자 연락사무소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날짜를 박아서 언제까지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안하면 합의서 해당조항이 사문화되는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합의서 전체를 우리가 관리하는데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일은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질문 :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연락사무소가 그럼 기일내에 설치가 안 될 경우에라도 그것을 안되는 경우를 감수하고서라도 소위 북측이 내놓은 그 두가지 다른 부문, 공동위하고 그 다음에 부속합의서하고 그에 관한 일괄적인 동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혀 고려할 수 없다…….

답변 : 고려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연락사무소하고 이북이 내놓은 부속합의

서, 공동위원회 문제하고는 경중에 있어서 비교가 안되요.

부속합의서는 기본합의서의 본질에 관계되는 것이고 연락사무소는 아주 기능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양자사이에는 우리가 연락사무소를 살리기 위해서 부속합의서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버릴 수는 없는거죠.

질문 : 기일내에 설치가 안되는 것도 감수할 수가 있단 말씀이죠?

답변 : 그것은 우리가 오늘도 얘기를 했지만 기일내 설치가 안되게 만들 때에 책임문제를 잘 고려해라. 해석은 별개의 문제죠. 거기에 연결을 시킬 수가 없죠.

질문 : 오늘 그러면 우리가 기초발언에서 연락사무소 부분에 대한 합의서 초안만 제시한 것은, 그러면 그것이 기한이 단지 설치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내놓은 거란 말씀이세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질문 : 이왕이면 북측은 저렇게 자주하는데 우리도 한번 다른 것도 다 내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런 것 없으십니까?

답변 : 아니 우리는 아까 우리 첫발언에도 나왔지만 우선 남북간이 얘기해야 될 것은 화해분야에서 무엇을 협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이냐 하는데 대한 하나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선 완급을 가려서 일시·동시에 일괄해서 토의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것이 먼저 토의해야 되느냐 하는 순서를 합의해서 토의해가지고 해결방안이 나오면 그 해결방안이 부속합의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명문조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북쪽 친구들한테도 누누이 얘기해 주었지만 그 『합의서 해당부문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한다』 그게 1항이에요, 기능에.

2항, 그 『해당부문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하는데 따라 각각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던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걸 바꿀수가 없죠. 이걸 바꾼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북회담이 조금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는데 다만 우리가 희망을 보는 것은 핵문제도 그렇고 지금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가지고 북쪽에서 참 무리한 입장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에서도 아무리 자기네가 존엄성 운운하면서 반발을 하더라도 국제적인 핵문제에 관한 압력을 굉장이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통제공동위원회를 기일내에 발족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식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끈덕지게 북을 갖다가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연락사무소 문제도 결국 그런 문제가 나올겁니다. 북측이 이런 무리한, 그런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이 기본합의서에 설정돼 있는 주어진 기일안에 이것이 설치가 안되는데, 설치가 안되는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혀 관계없는 문제하고 연계시켜서 말하자면 「바타」를 요구하면서 성립을 시키지 않을때에 그 문제가 북측에 어

떠한 이해득실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이제 북측이 자꾸 계산을 하겠지요. 계산을 해서 그 연락사무소 문제는 기일내에 성립되리라고 낙관을 합니다.

질문 :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 입장은 그러니까 화해분야에 관한 각 조항의 논의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협의를 해서 부속합의서를 만들자, 이거 아닙니까?

북쪽은 각조항마다 이제 대책을 주는 부속합의서를 오늘 내놓은 것 아닙니까?

답변 : 그 대책이 아니죠. 오늘 부속합의서 나온 것,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그 기본합의서에서 논의할 때 화해분야에서 다뤄져야 될 사업대상으로서 전부 채택 안하기로 했던 것을 전부 다시 되살리는 것을 내용을 한 것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혀 성실성이 있는 제의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은. 대책은 없고 순전히 그동안에 협의과정에서 버려졌던 것을 되살리는 것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합의서 초안이에요. 그래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거.

질문 : 그러면 「핵통위」 문제도 지켜봐야 되겠구만요, 18일까지…….

답변 : 아, 그것도 지켜봐야죠.

우리 생각으로는 낙관, 비관론이 있지만 이것은 계속 18일까지 우리가 계속 끈덕지게 북을 설득해야 되고 북이 그러한 설득에 호응하지 않으리

라고 단정할 수가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3월 11일 50부 발간

발간업체	삼신인쇄주식회사			
대표자	대표이사 현 효 선			
전화번호	337~0014			
인가근거	조내3. 510-20036('84. 5. 1)			
제목	정치분과위원회 제1차회의 회의록			
소속	남북대화사무국			
참여자	직급	5급	성명	김기웅